

|        |               |
|--------|---------------|
| 의안번호   | 2204277       |
| 의 퇴 인  | 이성윤의원         |
| 회 답 일  | 2024. 10. 30. |
| 추 계 번호 | 24D4018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법률 제19430호 <sup>1)</sup><br>부칙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 -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함. 다만, 제53조 <sup>2)</sup> 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함(제1항)<br>(현행) 2015년 → (개정안) 2027년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법률 제19430호<br>부칙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br>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시행 2025.1.1.] [법률 제19430호, 2023.6.9., 제정]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추가 재정 지원을 받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 창원시<sup>3)</sup>(2025년 12월 31일까지)와 충청북도 청주시<sup>4)</sup>(2029년 12월 31일까지)임
  - 개정안에 따라 향후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될 경우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예상되나,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지방자치단체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통교부세 총액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가 곤란함

---

3) 창원시의 경우 2010년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되었으며, 당초 추가 재정지원 기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매년 146억 6,4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2020년 12월 동 법 개정으로 5년 연장되어 2021년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 2022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의 추가 재정지원을 받음

4) 청주시의 통합 직전연도인 2013년 청주시·청원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은 3,117억 7,900만원이며,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인 187억 600만원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매년 추가재정 지원을 받으며, 2023년 6월 동법 개정으로 5년 연장되어 2025년에는 100분의 6, 2026년에는 100분의 5, 2027년에는 100분의 4, 2028년에는 100분의 2, 2029년에는 100분의 1의 추가 재정지원을 받음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지수현 | 김안나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지수현 | 02-6788-4831 | zisu37@nabo.go.kr |